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대관사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및 판로개척 지원 육성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이라 한다) 대관시설 및 부속설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관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창작스튜디오의 시설 또는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대관시설

오픈형 공간	분리형 공간
스테이지·팝업스토어	스튜디오, 컨퍼런스룸, 미팅룸, 디지털 라이브러리, 워크룸

- 부속설비: LED스크린, 음향장비, 조명 등 기본 대관시설에 설치된 고정 장치물 등
- 그밖에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제1호, 제2호 외 이동이 가능한 물품
(기본 대관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본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청"이라 함은 창작스튜디오의 시설대관을 위해 예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관"이라 함은 본 지침 「제2조 대관의 범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창작스튜디오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승인"이라 함은 본 지침과 별도 공고된 사항에 의거하여 창작스튜디오가 대관자에게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를 말한다.
- "대관자"라 함은 「제2조 대관의 범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창작스튜디오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대관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및 행사에 대해서만 창작스튜디오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 뷰티·패션 산업과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학교, 기관(단체) 및 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 . 판로개척 지원육성의 지원목적과 맞는 대관
- 그 밖에 뷰티·패션 발전 등을 위하여 서울시 및 창작스튜디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대관

제5조(대관의 종류) 공간별 대관 구분은 각 호와 같으며 대관 종류에 따라 별도 대관 절차와 신청 기준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행사대관: 오픈형 공간이 중점 활용된 패션쇼, 전시 등 기획형 행사
– 2달씩 구분하여 예약
* 예) 1월 1일 ~ 3월 31일
2. 일반대관: 분리형 공간이 활용된 비(非)기획형 회의 등

제6조(대관의 이용 한도) 「제5조 대관의 종류」 별 이용 한도는 각 호와 같다.

1. 행사대관: 기업, 학교, 기관(단체)당 연간 최대 10일 일수 이용 제한(사업자 번호 기준)
– 월 1회(최대 5일), 연간 2회까지 10일 이내 분할 신청 사용
2. 일반대관: 기업, 학교, 기관(단체)당 월 3회까지 공간별 시간 이용 제한(사업자 번호 기준)
– 스튜디오: 최소.최대 6~9시간(운영시간내), 이외: 공간별 최소.최대 2~3시간(운영시간내)
3. 제2호의 일반대관 이용 제한 시간은 본 지침을 준수하되,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별도 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뷰티·패션 발전 등을 위하여 서울시 및 창작스튜디오가 공동으로 개최·협력하는 정기 행사의 경우는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대관 신청 및 승인) 창작스튜디오 시설과 설비를 대관 받으려는 자는 「제5조 대관의 종류」에 따라 별도 안내된 절차를 통해 대관신청을 해야 하며, 창작스튜디오는 대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행사대관의 승인은 본 지침 및 별도 공고사항에 의거하여 창작스튜디오 자체 심의에 의한다.
4. 행사대관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행사대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외부 관련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한다.
6. 일반대관의 승인은 예약 접근성 제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별도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고 「제4조 대관 대상」 여부만 검토하여 승인하고 심의는 생략한다.
7. 창작스튜디오의 대관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대관 신청의 중첩·경합) 대관의 승인은 신청순으로 「제4조 대관 대상」 「제5조 대관의 종류」 「제6조 대관의 이용 한도」 「제7조 대관 신청 및 승인」 을 근거로 승인하되, 대관 신청의 일시·시간이 중첩되어 대관 간 경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4조 대관 대상」에 맞는 사업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지 기업, 학교, 기관(단체)(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

2. 「제4조 대관 대상」에 맞는 사업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지 외 기업, 학교, 기관(단체)(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
3. 기업, 학교, 기관(단체) 간 경합의 경우 1순위 학교, 2순위 기업, 3순위 기관(단체)

제9조(대관의 우선 배정) 대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창작스튜디오는 각 호에 해당하는 대관에 대해 대관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1. 뷰티·패션 발전 등을 위하여 서울시 및 창작스튜디오가 공동으로 개최·협력하는 행사를 경우
2. 기본 대관시설 중 오픈형 공간에서 개최되는 기획형 행사를 광범위한 소음 발생 등으로 분리형 공간 대관자에게 피해가 예상되거나 300명 내외 관람객 방문으로 스튜디오내 혼잡이 예상되는 「제5조 대관의 종류」 제1호 행사대관
※ 300명 이상 금지

제10조(대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 일로부터 1년간 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창작스튜디오에서 권고하는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15조 행사대관 안전관리」 의무에 소홀 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거나 파손복구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제4조 대관 대상」과 맞지 않거나 개최 후 공공시설 유지에 저촉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5. 신청 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6. 승인 후 별도의 사유 없이 대관 취소 2회 또는 당일 취소 1회가 발생된 경우
7.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8. 기타 본 창작스튜디오의 목적 및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9. 종교성, 정치성, 사행성 행사인 경우

제11조(대관의 취소) 대관이 승인된 이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대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후라도 창작스튜디오 임의로 즉시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신청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2. 대관시설의 전체 개방 및 무리한 사용 요구로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제10조 대관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4. 사전 협의된 「제15조 행사대관 안전관리」 사항과 내용이 다르거나 사고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대관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대관 내용의 변경) 「제7조 대관 신청 및 승인」에 의거하여 시설 대관 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정하여 행사 예정일 15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없으며 창작스튜디오가 임의로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과 달리 대관 변경사항의 범위가 크고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2. 기 승인된 타 대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대관 승인 당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제13조(시설물 설치 및 철거)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설물 설치 계획서를 창작스튜디오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출대상: 기본대관시설에 설치된 부속설비 외 추가로 필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9. 제1호에 의거 설치가 완료된 설치물에 변경을 가하거나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입 등이 추가되는 경우 창작스튜디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제3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본 창작스튜디오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에게 징수한다.

제14조(보증금 및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창작스튜디오는 대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물 훼손 및 원상복구의 사항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관 승인 시 별도의 보증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2. 보증금 제도는 행사대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3. 납부된 보증금은 행사종료 후 창작스튜디오가 사용시설에 대한 훼손 유무를 확인 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반환하며, 훼손이 발견된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에 보증금 일부를 원상복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14. 단, 원상복구 비용이 납부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복구 과정에 다음 대관자에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처리 비용이 발생된 경우는 모두 해당 대관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15. 대관 최종 승인 후 업체사정으로 인한 대관 취소의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행사대관 안전관리) 대관자가 시설을 사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안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관승인과 관련하여 별도 안전계획서를 필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사항 적용은 준비 및 철거가 포함된 대관기관을 모두 포함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대관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0. 행사특성에 따라 대관자에게 무대설치, 전시 디스플레이에 대한 구조적 안전을 검토하기 위한 설치물의 종류, 수량, 중량,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세내역 및 도면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창작스튜디오가 정한 날까지 행사 및 전시 전반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11. 대관자는 창작스튜디오가 요청하는 경우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임시구조물 안전진단 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은 창작스튜디오의 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대관자가 행사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 비상구·소화기 앞 기물 방치와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특수효과 및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14. 대관자는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반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행사는 사전에 인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을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5. 이외 창작스튜디오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대관자가 시설을 사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창작스튜디오가 정한 안전 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17. 행사가 끝나면 창작스튜디오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할 것

제17조(배상책임)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손해배상) 시설 또는 설비를 대관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대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9조(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는 창작스튜디오의 해석에 따른다.

※ 이 지침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